

##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상속 증여공제(상증법 규정)

### <1> 상속공제

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(기초공제)

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(이하 “기초공제”라 한다)한다.(2010.01.01 개정)

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(배우자 상속공제)

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(2016.12.20 개정)

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(그 밖의 인적공제)

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.(2010.01.01. 개정)

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(일괄공제)

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. 다만, 제67조 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.(2019.12.31. 단서개정)

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(금융재산 상속공제)

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(이하 이 조에서 “순금융재산의 가액”이라 한다)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,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.(2010.01.01. 개정)

### <2> 증여공제

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(증여재산 공제)

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.(2010.01.01 개정)

1.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: 6억원(2010.01.01 개정)

2. 직계존속(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(사실혼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: 5천만원. 다만,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(2014.01.01 개정)

3. 직계비속(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)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: 5천만원(2015.12.15 개정)

4.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: 1천만원(2015.12.15 개정)

### <3> 거주자의 정의

####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8. "거주자"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居所(居所)를 둔 사람을 말하며, "비거주자"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주소와居所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15.12.15. 신설)

####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(주소와居所의 정의 등)

①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8호에 따른 주소와居所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조, 제4조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.(2016.02.05 개정)

②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 2 및 제3조에 따르며,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.(2016.02.05. 개정)

####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(거주기간의 계산)

① 국내에居所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.(1994.12.31 개정)

② 국내에居所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,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居所를 둔 기간으로 본다.(2015.02.03 개정)

③ 국내에居所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居所를 둔 것으로 본다.(2018.02.13 개정)

④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

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,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.(2016.02.17. 신설)

**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(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)**

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(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)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.(2015.02.03 개정)